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840 호 2013. 9. 12(목)

조 례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5호[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규 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17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5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18호[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2

고 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54호[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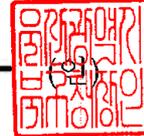
회 관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3년 9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5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5,500	1,500	6,000	70,000	20,000	80,000	200,000	55,000	220,000
소인	3,5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350,000	100,000	400,000	630,000	180,000	72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구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고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시설 사용료	50%	1. 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5% (일일사용료 제외)	
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1. 제1호~제8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역주민들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욕시설(중산행복샘)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제8조제2항)

나.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 및 비율 등 정비(별표 2,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3년 9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17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주민참여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의 부서명 및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별표]

구분청 실·과 사무분장표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주민참여과	1. 주민참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민단체 신설,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리더 발굴, 육성, 교육에 관한 사항 4. 북한 이탈주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8.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각종여론 및 동향관리 10. 구청장 동 방문 및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11. 명절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13.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5.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16. 친절배가 운동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7. 기관단체 협의회에 관한 사항 18. 주민조례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19.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 2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및 피해신고서 접수와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21.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22.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2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4.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5.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26. 동사무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7. 동·반 조직운영 및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28. 동 예산 운영 및 동행정 업무 종합조정(동시달 문서통제 등)에 관한 사항 29. 직십자 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30.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1. 주민만남의 날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32. 새마을소득특별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33. 커뮤니티비즈니스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4.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조직 신설 육성 35. 마을기업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6.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37. 평생학습 정책연구와 주민요구 조사 38. 국내외 평생학습 기관·단체 간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39.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40.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관리 41.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연수사업 등 시책 추진 42.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특화사업 개발 운영 43. 연도별 사업 평가(성과집, 영상을 제작 등) 44. 평생학습 축제운영과 참가 45.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46. 평생학습 주민교육(교양, 전문교육) 사업 추진 47. 평생교육센터 관리와 운영지원 48.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관리 운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주민참여과	49. 평생학습 강사 은행제 운영 50. 그 밖에 평생학습프로그램(제3대학, 주민자치대학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1. 추억의 학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2. 해병대 전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53. 교육경비 지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4.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5. 지역자원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6.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7.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8.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 동주민센터) <신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u>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u> 4. < 삭제 > 5.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의 발굴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문화관련 사회단체 지원·행사에 관한 사항 8. 지역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공연장 등록 및 공연에 관한 사항 11. 지방 민속자료 발굴 조사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 옹호의 생산권장에 관한 사항 13. 문화예술 진흥대회 개최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문화예술 및 건전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여행업에 관한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6.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구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9.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에 관한 사항 21. 매장문화재 지표,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22.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등) 사업계획 승인·등록 및 지도감독 24.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 및 보고 25. 관광(단)지, 관광특구 신청에 관한 사항 26.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계획 수립추진 27.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마케팅 강화 28. 직장체육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신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1. 운동장 조성 및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2.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3.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4.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5. 생활체육 진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6. 운동장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 37. 운동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8.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9. 회관대관 업무에 관한 사항 40. 전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1.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42. 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전건설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행정의 종합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기정비업체)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9. 건설사업용지의 매수, 수용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사항 10. 건설사업에 따른 취득재산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11. 소유사실확인원 및 보상사실관계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2.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13. 노점상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약, 지출에 관한 사항 16. 도로건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8. 도로 및 건설공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9. 토목, 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0. 20미터 미만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21. 20미터 미만 도로 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로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로, 교량 설계 및 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 24. 공공시설공사의 전기관련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25.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6.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7. 보행자전용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8.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9.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30.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1.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2. 공동구 설치 및 정용로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3. 공동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4. 도로 및 가로정비(도로제설포함)에 관한 사항 3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사설계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6. 공공하수도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항 37. 하수종별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8. 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39. 지방2급하천에 관한 허가 사항 40. 공공하수도 비용에 관한 사항 41. 하수사용 계량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2.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집계에 관한 사항 43. 지하수 개발, 계측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4.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45.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전건설과	46.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7. 재해복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8. 방재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49. 방재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0.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1. 해빙기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2. 수방단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53. 재해발생시 경계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54. 재해방지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55. 수해발생예상시설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6.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57. 구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8.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9.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구난기관간 협조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0. 재난대비물자·자원·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61. 시설물·건축물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62. 교량·터널·지하도·지하철 등 공공용 또는 공용시설물의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3. 도시가스·항만·화학물질·원자력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협의) 64.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공공기관·지하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65. 구 산하기관(부서)의 재난관리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66. 사회적 재난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예방행정에 관한 사항 6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사무(통계, 현황보고, 행정안전부와의 창구역할 등) 68.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69. 안전문화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문화체육과 분장사무 중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안전건설과 분장사무에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체육과 분장사무 중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별표)
- '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에,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참여과로,
 - '문화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별도 분장사무 조정 없음)로 각각 세분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나. 주민참여과 분장사무 중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별표)
- 문화체육과 분장사무중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참여과에 신설
- 다. 안전건설과 분장사무 신설(별표)
- 신설대상 분장사무
 -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안전문화 전반에 관한 사항
 - ※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3년 9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기구) ①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행사운영 지원을 위하여 추진위
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단, 행정지원단 등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인사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
2. 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지원단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들로 구성하되, 남녀의 균등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행사지원
등을 수행한다.

제3조(사무국 직원)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에 두는 직원은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한다. 단, 축제 행사시 필요할 경우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복무 등) ①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원은 위원장이 임용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임시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기간, 인원 및 보수액 등에 대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수) 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 사무국장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사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준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② 사무국 직원에 대한 초임획정은 경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③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급범위는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에 따른다.

④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에 따라 재임용된 경우에는 경력 및 능력을 감안하여 호봉을 재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수당) ① 사무국 직원의 수당은 병절수당, 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예산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 추진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변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예산의 적정 집행과 평가·관리를 위한 정산서류를 반기마다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수입금 내역은 축제 개최결과 정산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위원회 승인) ① 사무국장은 예산집행 상황을 포함한 축제 개최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축제개최 결과보고는 축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및 보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축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6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를 널리 홍보하고 축제가 갖는 가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기구 설치 (제2조)

-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에 자문단 및 행정지원단 자문기구 설치

나. 사무국 직원 및 임시직원을 채용 (제3조)

다. 사무국 직원이 위탁사무 수행을 위해 임용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요구 규정 (제4조)

라. 사무국장 및 사무원 보수규정 마련 (제5조·제6조)

- 사무국장(6급), 사무원(9급)에 준하는 봉급 지급
- 초임 획정은 경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하고, 매년 1호봉씩 호봉승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경력 및 능력을 감안하여 재 획정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수당은 명절수당, 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마. 추진위원회의 예산집행현황 제출 및 보고 (제8조·제9조)

- 추진위원회는 예산집행 정산서류를 반기마다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보고하고, 연간 집행현황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 사무국장은 예산집행 상황과 축제개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축제개최 결과보고는 축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바. 위원회 축제관련 업무를 검사 및 보고하게 하는 규정 마련 (제10조)

사. 운영세칙 (제10조)

-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아. 시행일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단, 보수·수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2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위 치(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14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사업
 - 나. 명 칭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사 업 명		시설내역	부지면적(㎡)	비율(%)
합 계			155,520	100.0
진입도로	대로2-29호선	L=890m, B=30m	32,788	21.1
	소로1-17호선	L=200m, B=11m	2,013	1.3
진출입램프	소로3-1호선	L=355m, B=5.5m	11,124	7.2
	소로3-2호선	L=400m, B=5.5m	2,029	1.3
완충녹지	282호		107,566	69.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장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424-2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당 초 : '07. 1. 4. ~ '13. 8. 31.
 - 나. 변 경 : '07. 1. 4. ~ '14. 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의 토지 및 설치되는 도로 및 도로 시설물 등 제반시설은 준공 전 소유권을 해당 관리청으로 이전하여야 함.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052-241-7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